조선후기『列聖御製』의 編刊과 保存*

- 1726년『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을 중심으로 -

The Publishing and Preservation of *Successive Kings' Manuscript*(列聖御製) in the Late Joseon Dynasty

- Centered on *Gyeongjong Daewang Eoje Cheomgan Sideungnok*(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 -

조 계 영 (Cho, Gye-Young)**

◁ 목 차 ▷

1. 머리말
2.『열성어제』의 編纂과 刊印
2.1 景宗御製의 蒐集과 교정
2.2『열성어제』의 목록 작성
2.3『열성어제』의 板刻과 印出
3.『열성어제』의 보존 체계
3.1『열성어제』의 粧績
3.2『열성어제』의 進上과 奉安
3.3 舊頒賜件의 收聚와 新頒賜
4.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초 록>

'御製'란 국왕이 지은 글을 말한다. 조선후기에『열성어제』를 간행하는 규범은 1631년 義昌君 李珖이 太祖부터 宣祖까지의 어제를 繕寫하여 進獻한 것을, 開刊하여 璿源閣에 봉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후대왕의『열성어제』를 간인하는 것을 '添刊'으로 지칭하며, 선왕들의『열성어제』에 이어 함께 간인하는 것을 '合附'라고 일컫는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은 1726년 1월부터 6월까지 景宗의 어제를『열성어제』에 첨간한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본 논문은『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열성어제』의 편찬·간인·보존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왕의 사후에 어제를 수집하고,『열성어제』의 목록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 인출한『열성어제』를 보존하기 위해 장황→진상→봉안→반사에 이르는 전모를 알 수 있었다.

要語:『列聖御製』, 編纂, 刊印, 粧績, 進上, 奉安, 頒賜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013).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newlycho@snu.ac.kr)

접수일: 2009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16일

www.kci.go.kr

<ABSTRACT>

'Eoje(御製)' means the manuscript written by king. The standard for publishing *Yeolseong eoje*(列聖御製)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originated from the presentation of manuscripts written by kings, starting from King Teajo(太祖) to King Seonjo(宣祖), and transcribed by Yi Gwang(李珖, 義昌君) to Seonwongak(璿源閣) in 1631. Since then, the public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for later kings was called 'Cheomgan(添刊)' and the public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to which writings of later kings were added was called 'Habbu(合附).'

Gyeongjong Daewang Eoje Cheomgan Sideungnok(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 14202), now preserved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record of the process of adding the manuscripts of King Gyeongjong from January to June of 1726 to *Yeolseong Eoje*. This paper examined the compilation, addition and preservation of *Yeolseong Eoje*(列聖御製)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reviewing *Gyeongjong Daewang Eoje Cheomgan Sideungnok*. As a result of this examination, the entire process of collecting manuscripts after kings' death, and making the list of *Yeolseong Eoje* for the first time, and the steps from binding done to preserve the printed *Yeolseong Eoje* to their presentation, enshrinement and granting were all verified.

Key words: *Yeolseong Eoje*, Edition, Publication,
Book-binding, Presenting, Enshrinement, Granting

www.kci.go.kr

1. 머리말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서책 編纂과 刊印은 숙종대에 틔운 싹을 영조대에 계승하여 정조대에 이르러 기록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왕실의 계보와 先王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列聖御製』·『列聖御筆』·『璿源系譜紀略』은 奉安 儀禮를 거행하여 史庫 璿源閣을 비롯한 특정한 봉안처에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선왕을 높임과 동시에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왕실서책들이 모두 17세기에 宗親에 의해 편찬과 간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631년(인조 9년)에 義昌君 李珖이『열성어제』를 繕寫하여 開刊하였고[1], 1662년(현종 2년) 嶺陽君 儇이『열성어필』을 摹刊하여 올렸고,[2] 1679년(숙종 5년)에 朗原君 李偘이『선원계보기략』을 편찬하여 올렸다.[3]

이와 같은 조선후기의 왕실서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조선후기에『열성어제』를 편찬한 후 간인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 보존 체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보존의 개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기록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실행을 의미한다.[4] 이러한 보존의 개념에서 본다면 서책의 보존 체계란 서책의 편찬에서부터 시작하여 간인→粧績→進書→봉안→반사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는다.[5]

---

1)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1월 13일 경술.
2) 「승정원일기」, 현종 2년 12월 25일 경오.
3) 1679년 2월 15일에 宗臣 朗原君 李偘이 列聖의 世系와 內外子孫을 모아「璿源譜略」이라고 이름하고 상소를 갖추어 바치니, 숙종이 간인하여 널리 반포하라고 명하였다.「숙종실록」 8권, 숙종 5년 2월 15일 경진.
4) 보호(conservation)는 기록물이 훼손과 부식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복원(restoration)은 손상된 기록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R.하비 지음/권기원·방준필·이준원 옮김,「자료보존론」(사민서각, 1999년), 21-23. 참조.
5) 물론 이 과정 이후에는 서책 봉안처와 수장처를 奉審하고 서책을 포쇄하는 등의 관리가 보존 체계에 포함된다. 조선시대 公私간에 서책의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목판에 새겨 인멸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후손에게 영구히 전할 계획'을 서책을 보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여겼다.

www.kci.go.kr

'御製'란 국왕이 지은 글을 말한다. 어제는 수록한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상황에서 지어진 낱장의 어제가 있고, 국왕 개인의 문집이 있고, 역대 국왕의 어제를 모아 놓은 『열성어제』가 있다. 『열성어제』를 간행하는 규범은 1631년 의창군 이광(1589-1645년)이 太祖·太宗·世宗·文宗·世祖·成宗·仁宗·宣祖의 어제를 繕寫하여 進獻한 것을, 開刊하여 璿源閣에 봉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6] 이후 후대왕의 『열성어제』를 간인하는 것을 '繼刊·續刊·添刊'으로 지칭하며, 선왕들의 『열성어제』에 이어 함께 간인하는 것을 '合附'라고 일컫는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열성어제』에 관해서는 편년 사료와 跋文을 통해 『열성어제』의 편찬과정을 고찰하고, 御製 詩文의 특징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다.[7] 특히 이종묵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현전하는 『열성어제』의 실물 조사를 통하여 간인년도·卷帙·수록 시문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열성어제』는 영조가 비유하였듯이 私家의 文集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8] 그러나 아직까지 『열성어제』에 관한 연구는 사가의 문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며, 『열성어제』가 간인되기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자료에 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열성어제』와 『열성어필』은 간인할 당시의 국왕 어제와 어필은 포함하지 않고 사후에 후계 왕에 의해 간인되어, 사고 선원각에 봉안하고 신료에게 반사함으로써 영구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9] 조선후기 궁중에서의 어필 수장과 『열성어필』의 간인에 대해서는 1725년의 『乙巳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屛風謄錄』을 분석하여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

6) 「승정원일기」, 숙종 4년 11월 13일 경술.

7) 조선시대 「열성어제」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김남기, "「列聖御製」의 편찬과 국왕 시문의 특징,"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참조.

8) 「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 三月初七日. "今此御製開刊之擧 以私家言之 乃是文集也."

9) 1679년 8월 13일에 吳始壽는 「열성어제」의 간인을 마친 후 「열성어필」을 간인할 것을 아뢰면서 「열성어제」와 「열성어필」의 동일한 위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5년 8월 13일.

10) 黃晶淵,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 「藏書閣」 제12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년).

www.kci.go.kr

이에 비견할 수 있는『열성어제』에 관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은 1726년 1월부터 6월까지 景宗의 어제를『열성어제』에 첨간한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11] 이 등록은 경종의 어제를『열성어제』에 합부하기 위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경종어제의 수집과,『열성어제』의 목록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 그리고『열성어제』의 교정과 인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12] 본 논문은『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열성어제』의 편찬・간인・보존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국왕의 사후에 어제를 수집하고『열성어제』에 합부하기까지의 과정이 밝혀질 것이다.

2.『열성어제』의 編纂과 刊印

2.1 景宗御製의 蒐集과 교정

2.1.1 景宗御製의 蒐集

경종은 1720년 6월에 즉위하여 1724년 8월에 승하하였기에 그의 재위기간은 4년 2개월 정도였다.[13] 경종어제에 대한 논의는 1726년 정월에 宗臣인 西城都正

11) 이 등록의 冊衣에는 '丙午年 御製添刊時儀軌'로 墨書되어 있고, 卷首에는 '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으로, 6월에 호조와 병조에 보내는 公事에서는 '列聖御製開刊時儀軌'로 기록되어 있다. 등록은 종부시에서 작성한 것으로 56장으로 된 필사본이며, 크기는 48.5×29.5cm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동일본으로「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3)이 현전하고 있다. 두 등록은 모든 내용이 일치하며 다만 구반사건과 신반사건에 나와있는 명단에 표시를 부가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이하에서는 '「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을 '등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2) 본 등록 외에「열성어제」의 간인과 관련하여 1756년 중종과 세조의 어제를 수정하여 다시 간인할 때의 의궤인「列聖御製釐正更刊時自本寺修整儀軌」(奎14201)가 있다. 1책(14장), 필사본, 47.9×29.7cm.

13) 1726년 1월 당시에는 1721년(경종 1년) 4월부터 시작된「숙종실록」의 편찬이 진행되고

www.kci.go.kr

李焯의 상소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종의 어제를 간인하여 태조에서 숙종까지의 『열성어제』에 이을 것을 아뢰었다.[14] 영조 또한 경종어제 첨간에 대해 하교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2월 4일에 시작되었다.

영조는 '御製刊印'이라는 事體로 보아서는 校正廳을 설치하여 간인해야 하지만, 숙종의 수많은 어제와는 다르니 설청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다만 종부시에서 校正官 몇 사람을 差定하여 『선원보략』을 간인한 예에 따라 『열성어제』를 첨간하도록 명하였다.[15] 3월 5일 종부시에서 종부시 正 成震齡과 司正 李挺樸을 교정관으로 차정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영조는 『열성어제』를 종부시에서 주관하였을 때 누가 교정당상을 담당했는가를 아뢰라고 명하였다. 1691년 『열성어제』를 개간할 때에 提調는 朗善君 李俁(1637-1693년)와 參判 權愈였으며, 校正官은 都正 成平君 李濯이었으며 監董官은 直長 朴泰翊이었다.[16] 영조는 1691년의 예에 의해 교정관을 宗臣으로 差下하라고 하여 종부시에서는 성진령 대신 都正 海春君 李栻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17]

경종어제를 『열성어제』에 첨간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첫 번째 난점은 어제의 篇數였다. 경종은 46년간 재위한 숙종에 비하면 어제가 많지 않아 간인을 하기에는 어제의 篇數가 부족하였다. 영조가 內間에 보관된 경종의 어제를 본 것은 2편의 文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2월 16일에 영조는 대내에 수장되어 있던 경종의 어제를 종부시에 내주었다. 종부시는 경종어제를 수집하기 위해 3월

있었고, 4월부터는 「경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14) 등록, 丙午正月日. 西城都正上疏.

15) 등록, 二月初四日. "其在重事體之道 所當設廳刊 而此與先朝數多御製有異 不必設廳 只令宗簿寺差定校正官數人 依譜略開刊例 使之添刊宜矣."

16) 등록, 三月初五日. "傳曰 庚子年 則列聖御製自校書館爲之 其前自宗簿寺之 其時校正堂上 誰某爲耶 問啓 政院 啓曰 云云事命下矣 招問宗簿寺郎廳 則以爲辛未年 列聖御製開刊時 提調郎善君參判權愈校正官成平都正濯監董官直長朴泰翊云矣敢矣."

17) 본 등록에서는 1691년 「열성어제」의 간인에 의거하여 교정관 차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1687년 12월 18일 실록 기사를 근거로 南致熏이 「열성어제」의 간인을 건의하여 숙종이 윤허하였으나, 실제로 간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1691년에 간인한 「열성어제」에 대해서는 1682년본과 1720년본의 수록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현전 여부를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www.kci.go.kr

에 漢城府의 東部·西部·南部·北部·中部에 甘結을 내렸다. 각부에서는 洞里의 士大夫家와 閭家에서 어제의 詩文이나 筆札을 수장하고 있다면 3월 10일 내에 종부시에 수취하여 내납하도록 하였다. 만약 3월 10안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 알리지 않아 빠트리는 폐가 있다면 각부 書員과 각 洞任掌 등은 重究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감결이었다.

종부시의 감결을 받은 각부 중에 3월 10일에 첩정을 올린 것은 중부와 서부였다. 중부와 서부에서는 부에 속한 각 契에서 경종어제의 시문과 필찰을 수장하고 있는 곳을 士夫와 常漢의 각가의 호마다 찾아다니며 물었으나 수장하고 있는 곳이 없었다는 내용의 첩정이었다.[18] 이들 각부는 종부시의 감결에 근거하여 부에 속한 각 계에 알렸고, 각 계에서는 手本을 소속 부에 올려 경종어제의 수장처가 없음을 알렸던 것이다. 종부시는 중부와 서부의 첩정을 받고 다시 찾아내여 즉시 보고하라고 題辭(데김)를 내렸다.

제사를 받은 중부와 서부는 다시 부에 속한 각계의 任掌 등을 불러 다시 찾아내도록 하였으나 경종어제를 수장한 곳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19] 또한 남부에서도 경종어제를 수장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첩정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3월 15일에 도착한 북부에서 올린 첩정에 경종어제가 있어 상납한다는 것이었다. 북부 陽德坊契에 故 內官 長番 朴瑛이 수장한 御製 筆札을 상납한다는 것이다.[20]

3월 16일에 종부시 제조인 이즙이 경종어제 수집에 관해 5부에 신칙하여 동부·서부·남부·중부는 모두 없다고 첩보하였는데, 북부에서 경종의 춘저시의 친필로 내관 박연에게 하사한 一貼을 상납하였으니 예람한 후에 하교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戚里·宗班·廷臣이 하사를 받은 것과는 다르고,『열성어제』의

18) 등록, 同日(三月初十日). "西部爲牒報事 本寺甘結據 景宗大王御製御筆札各體文封納事 部屬各契良中 坊坊曲曲嚴明知委 各別申飭爲乎則 各契手本內 士夫與常漢 各家逐戶搜問是乎矣 元無藏置處是如爲有等以 緣由牒報事."

19) 등록, 三月日. "中部爲牒報事 當牒呈據 景宗大王御製詩有處 更加訪問牒報亦爲有等以 各契任掌招致部衙 更加搜訪爲有矣 所告內無有是乎爲有等以 不得搜納之意牒報向事 題辭內到付," 同日. "西部牒報事."

20) 등록, 三月十五日. "北部爲牒報事 本寺甘結據 部屬各契良中 景宗大王御製御札 士夫及閭閻家詳細搜問 則部屬陽德坊契 故內官長番朴瑛家御製筆札 出給卽時上納爲有置 相考施行事."

www.kci.go.kr

編刊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내관에게 하사한 어제를 함께 간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21] 홍석보가 경종의 친필인 만큼 한 번 예람하기를 청하였지만, 영조는 內官과 外臣의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또한 이즙은『열성어필』간본에 수록된 경종의 어제 3편을『열성어제』에 입간할 것을 아뢰었는데,「春宮時賜判中樞府事李畬」·「春宮時賜賓客閔鎭厚書」·「諭副率金載海」가 이에 해당한다.[22] 또 이즙은 동궁 시절에 지은 上疏 여러 본이 春坊에 있다고 하니 모두 入刊할 것인가를 여쭈었다. 行大司成 홍석보는 자신이 춘방에 있을 때 廳上의 櫝 안에 수장해 두었는데 모두 경종의 친필임을 아뢰었다. 이에 영조는 모두 입간할 것을 명하였다. 3월 20일에 영조는 전에는 어제 중 疏章을 많이 수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內下한 소장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입간하라고 종부시에 분부하였다.[23] 대내에서 내려준 경종의 소장은 11본이었다. 종부시는 이 11본의 소장을 시임과 원임 대신들에게 물으니, 우의정 洪致中과 領中樞府事 閔鎭遠이 1705년 10월의「辭禪位疎」와 1713년 1월의「請尊號疎」를 입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음을 아뢰었다. 영조는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수록된 상소가「辭禪位疎」와「請上尊號疎」이다.

위와 같이 內間에 있던 경종어제와는 달리 外間에서 수집한 경종어제의 수록 여부에 대해 영조에게 아뢰었다. 먼저 이즙이 민진원의 형수가 하사받은 어제 五言絶句 1편을 함께 입간할 것을 아뢰었다. 이는 判書 閔鎭厚의 부인에게 내린「賜閔參判夫人」을 말한다. 홍석보가 端懿王后와 延齡君에 대한 제문이 內下한 어제에는 없어 외간에서 전파된 본이 있음을 아뢰었다. 영조는 연령군에 대한 제문은 延齡宮房에 혹 수장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고,「제단의왕후문」역시 초본을 수정하여 들이면, 內藏을 모아 검열하여 혹 진본을 얻으면 다시 교정하는

21) 戚里는 長安에 있던 마을이름으로 한나라 때 천자의 인척이 여기에 살았으므로 외척의 뜻으로 쓰인다.

22) 등록, 三月十六日. "礪城君所啓 景宗大王御製三篇 載於列聖御筆刊本中 此則當爲入刊在東宮時上疏諸本 於春宮云 亦爲一體入刊乎 上曰 其數似不多矣 洪曰 似是三本矣 小臣在春坊時 曾已藏在廳上櫝中 皆親筆也."

23) 등록, 三月二十日. "傳曰 前御製中 疏章不爲多載 今此內下疏章 議于大臣 入刊事 分付宗簿寺."

www.kci.go.kr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경종의 어제는 모두 詩 8首와 文 17首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영인한『열성어제』권18에 수록된 경종의 어제는 <표 1>과 같다. 반사건은 권17에 해당하는「肅宗大王別編」이 없기 때문에 경종의 어제가 권17이 된다. 반사건의 목록에는 '卷之十七 別編'이라고 기록한 후 경종의 어제를 다시 '卷之十七'로 卷次를 매기었다. 그런데 6월 10일에 昌山君 李相이 경종의 시 한 수가 숙종의 어제라고 상소를 올렸다.[24] 창산군은『열성어제』중

<표 1>『열성어제』권18에 수록된「경종어제」

문체	순번	제 목	注	비고
詩	1-5	春帖五首		
	6	賜閔參判夫人	庚辰 ○參判名鎭厚	1700년
	7	歲在庚寅菊秋上澣題		1710년
	8	去夜灑雨		
文	1	辭禪位疎	乙酉十月日	1705년
	2	請上尊號疎	癸巳正月日	1713년
	3	土階三等論		
	4	君子小人相反論		
	5	趙普論		
	6	呑蝗論		
	7	除讞法論		
	8	勿治檻論		
	9	自鳴鐘記		
	10	題饑民救活書		
	11	舟水說		
	12	癸未十一月十一日	是日孟子第七卷畢 講後 手書下問	1723년
	13	賜判中樞府事李畬	出列聖御筆 下兩書同	
	14	賜賓客閔鎭厚書		
	15	諭副率金載海		
	16	端懿嬪祭文		
	17	延齡君祭文		

24) 등록, 六月初十日 昌山君 上疏. "列聖御製中 肅宗大王御詩 第十一篇二十六張所印 宋徽宗白鷹詩二首中 下一首全文 復印於景宗大王 庚寅菊秋御詩 其所印於兩朝御詩刊布中宜有參考處分之擧 故敢此附陳 伏願聖明垂察 而處之焉."

www.kci.go.kr

「숙종어제」의 시 第11篇 26張에 인출한 '宋徽宗白鷹詩' 2首 중 아래 1수의 全文이 「경종어제」의 '庚寅菊秋' 詩로 두 번 인출되었음을 아뢰었다.[25] 영조는 상소에서 아뢴 대로 두 번 기록되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은 필시 경종이 춘궁 시절에 등서하였던 것인데 착오하여 경종의 시로 넣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啓字印'을 찍지 않은 창산군의 原疏를 종부시에서 내려 신속하게 수정하여 고칠 것을 명하였다.[26]

2.1.2 景宗御製의 교정

3월 16일에 이집은 內下한 御製謄本은 半字를 쓰거나 俗字를 썼는데 목판에 새길 때에는 획을 갖추어 正書하는 것이 마땅함을 아뢰었다. 또 경종어제의 친필을 마음대로 고치기가 어려우니, 숙종어제의 예에 의해 誤字의 아래에 '當作某字'라는 註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또한 이즙은 「自鳴鐘記」 중 '精神流通'의 '流'字가 水邊이 言邊으로 썼고, 「饑民救活說」 중 '下浣'의 '浣'字를 水邊을 阜邊으로 썼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水邊과 言邊과 阜邊이 잘못 쓰기 쉬운 글자들로 이 오자들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개정할 것을 아뢰었다. 영조는 「自鳴鐘記」의 '流'字는 여러 번 보아 '流'字임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어제 등본의 이러한 오자는 轉寫할 때의 잘못으로 나온 것이니 改正하고, 막중한 어제를 잘못 쓴 것은 당해 조의 寫內官을 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27] 『열성어제』에는 이 두 오자는 개정하여 '流'자와 '浣'자로 수록되어 있으며 전사할 때의 오자이므로 주는 달지 않았다.

4월 11일에 홍석보가 경종어제 가운데 교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25) 『열성어제』 권11의 26장에는 「題宋徽宗白鷹圖」의 제목으로 숙종의 시 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두 번째 수가 권18에 경종의 시 「歲在庚寅菊秋上澣題」로 중첩하여 수록되었다.

26)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1726년본 『열성어제』 10帙은 이러한 사항이 수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표 9>의 3번 반사건에 해당하는 이의현의 발문에는 경종의 시가 7수로 기록되어 있다.

27) 등록, 三月十六日. "上曰 自鳴鐘記中流字 予亦累見之 分明以流字矣 此由於傳寫之誤 改正可也 莫重御製有此誤書 極爲未安 當該曹寫內官 從重推考可也."

www.kci.go.kr

> 또 아뢰기를 "景宗大王御製 중『土堦三等論』의 제17행에 '人君至尊之'에서 '至尊之'의 上下에 빠진 문장이 있는 듯합니다.『君子小人相反論』의 제1행에 '莫不與之而'의 '而'字가 '以'로 의심스럽고, 제7행 '以其乎五性'의 '乎'字가 '有'字로 의심스럽고,『趙普論』제17행 '臣竊爲'의 '爲'字가 '謂'로 의심됩니다. 중초를 올릴 때 이 곳들은 모두 付籤하여 들였습니다. 상께서 本御筆과 서로 비교하라고 말씀하셨고, 부첨을 뗀 이하는 이제 다른 說을 다시 용납할 수 없지만 무릇 이 4字는 끝내 문장의 뜻에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某字'는 '某字'로 의심된다고 각기 그 書頭에 적는다면 古人이 '傳疑'한 例를 보존하게 되어 事宜에 합할 것입니다. 황공하옵게 아룁니다."

영조는 모든 서책 또한 이러한 예가 많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열성어제』중『숙종어제』卷之十五 26張에 수록된「精一齋壁藏銘」에서 '嘉模洋洋'의 '模'字 아래에 '模疑謨'라는 주가 달려 있다.[28]『열성어제』중「경종어제」에 수록된 文에서 4곳을 교정하여 주를 달았다.[29] 교정의 주를 쓰는 형식이 숙종어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3월 16일에 이집이 건의한 바와 같이 '當作某字'로 한 것이 아니라 '某疑某'의 형식으로 주를 단 것이다.『열성어제』중「경종어제」에서 교정주가 달린 곳은 4월 11일에 홍석보가 아뢴 내용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종부시에서 호조에 보낸 공사를 참조하면 종부시 제조 2員・낭청 3員・교정관 2員이 각기 교정하여 7건을 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30]

<표 2>「경종어제」의 교정 사항

제목	교정처	校正注
土堦三等論	至於人君 至尊之 則易出驕吝之心	至尊之上下 疑有闕文
君子小人相反論	天降生民莫不與之 而仁義禮智之性矣	之而之而 疑以
	受命于天者 以其乎五性五倫也	乎疑有
趙普論	臣竊爲趙普 非純誠之人也	爲疑謂

28)「列聖御製」三(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2년), 56쪽 참조.
29)「列聖御製」三(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2년), 149・150・155쪽 참조.
30) 등록, 三月二十九日 戶曹公事. "爲相考事 今此御製開刊時 提調二員 郎廳三員 校正官二員 校正件各一件 所入厚白紙及蜜墨諸具 考例算摘上下事."

www.kci.go.kr

『열성어제』의 跋文은 崇政大夫 行龍驤衛 副司直 兼知春秋館事 李宜顯이 撰進하였다. 4월 2일 종부시에서 대제학 이의현이 경종어제 속간의 발문을 찬진하지 못하고 坐罷되었는데, 어제의 각역은 거의 끝나 가는데 발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아뢰었다. 영조는 이미 전대제학에게 찬진의 명을 내렸으니 즉시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31]

2.2 『열성어제』의 목록 작성

1726년 『열성어제』의 개간에서 이전의 『열성어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목록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3월 7일 종부시 제조인 礪城君 李樘은 목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모든 서책에 목록이 있는 까닭은 참고하여 열람할 때 편리하기 때문인데 1720년 간행한 『열성어제』에도 목록이 없으니 이번 경종어제를 개간할 때에 전후목록을 함께 간인할 것을 아뢰었다. 이에 영조는 어제는 私家로 말한다면 文集이니 목록이 없을 수 없다며 허락하였다.

1720년에 개간한 『열성어제』는 16卷 8冊인데, 영조는 8책의 목록이 수 십장을 넘을듯한데 만약 이것을 初卷에 다 수록한다면 너무 두꺼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매 권에 각각 목록을 수록하는 것과 초권에 다 수록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즙은 초권이 두꺼울까 염려된다면 권마다 각기 목록을 두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영조는 목록을 出草한 후에 그 형세로 보아 초권에 모두 부치고, 만약 두꺼우면 매권의 머리에 나누어 달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너무 두껍지 않다면 초권에 모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32]

3월 16일에 이즙이 어제목록이 너무 두꺼워 하나의 제목에 여러 편이 있는 것을 모두 '又'字로 열서하면 張數가 더욱 두터워지니 각각의 제목 아래에 몇 수인가를 적는 것이 어떠한지를 아뢰었다. 홍석보는 어제의 사체가 지극히 중하여 반드시 '又'字로 열서해야 하지만, 서책의 목록은 간략함이 가장 중요하니 '某題 幾首'로

31) 등록, 四月二日.

32) 등록, 三月初七日. "上曰 出草後 觀其形勢 並付初卷 若或過厚 則分係于每卷之首 如不至過厚 盡弁于初卷 可也."

www.kci.go.kr

적는다면 장수의 공역이 줄어들고 '提綱挈要之道'에 합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영조는 '御製 編次'의 사체가 비록 중요하나 私家로 말한다면 文集의 類이니, 사가 문집의 예에 의해 각 제목 아래에 '幾首'라고 적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3월 17일에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어제의 사체가 지극히 중하여 私家의 문집에 비할 것이 아니니 비록 많게는 10행에 이르는 제목이라 하더라도 역시 모두 謄書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열성어제 목록 개간할 때 '제강설요'에 힘쓰라는 뜻에 어긋날 듯하니, 상량하여 제목을 刪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감히 擅便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영조에게 아뢰었다. 영조는 이미 하교한 것에 따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열성어제』목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범례는 다음과 같다.

[列聖御製目錄凡例][33]

- 열성어제는 모두 16편인데 처음엔 목록이 없었다. 이제 경종대왕어제의 속간을 인해 종부시 제조 려성군 즙 등이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 고람에 편리하도록 아뢰어 윤허하여 비로소 추간하였다.
- 하나의 제목에 여러 편의 원본들은 모두 '又'字와 '其二', '其三'으로 그 수로 나누고, 목록에는 列書하지 않는다. 게다가 '溫幸' 여러 편과 같이 한결같이 聖敎에 의해 본제목 아래에 단지 그 수만을 쓴다. '八景' 등의 시 또한 이 예를 쓴다.
- 본제목 중에 半字와 俗字를 쓴 곳은 자획을 갖추어 正書하여 모두 睿裁를 받는다.
- 어제 중 혹 하나의 제목이 많게는 10항에 이르는 것이 있다면 목록에 다 수록하는 것 은 아마도 '提綱挈要'의 뜻이 아니므로 刪節을 아뢰어 간약함을 따른다.
- 하나의 제목이 여러 항인 것은 그 제2항 이하는 모두 한 字를 내려 다른 제목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33)『列聖御製』(奎2986, 1726년)「列聖御製目錄凡例」. "一 列聖御製 凡十六編 而初無目錄 今因景宗大王御製續刊 宗簿寺提調礪城君臣樨等 以別爲目錄 以便考覽 筵白蒙允 始爲追刊 一 一題累篇原本 皆以又字與其二其三 別其數 而目錄則不必列書 且如溫幸諸篇 一依聖敎 本題下只書其數 故八景等詩 亦用此例 一 本題中 凡書以半字俗字處 具字畫正書者 皆稟睿裁 一 御製中 或有一題多至十行者 盡載目錄 恐非提綱挈要之意 故稟旨刪節以從簡約 一 一題數行者 其第二行以下 皆低一字 使勿與他題相混."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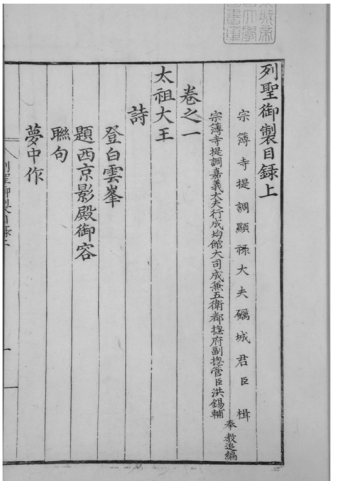
列聖御製目錄上
宗簿寺提調顯祿大夫礪城君臣 楫奉敎編
宗簿寺提調勇義大夫行成均館大司成兼五衛都摠府副摠管臣洪錫輔
卷之一
太祖大王
詩
登白雲峯
題西京影殿御容
聯句
夢中作

<그림 1>『열성어제』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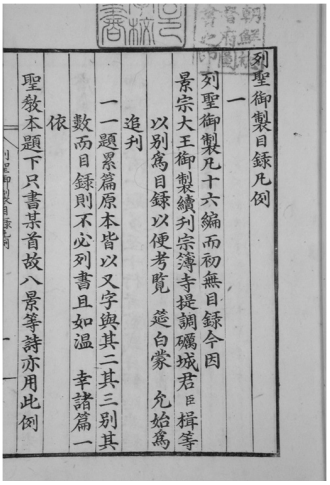
列聖御製目錄凡例
一
列聖御製凡十六編而初無目錄今因
景宗大王御製續刊宗簿寺提調礪城君臣楫等
以別爲目錄以便考覽 延白蒙 允始爲
追刊
一一題累篇原本皆以又字與其二其三別其
數而目錄則不必列書且如溫 幸諸篇一
依
聖敎本題下只書某首故八景等詩亦用此例

<그림 2>『열성어제』의 목록 범례

3월 27일에 종부시에서『열성어제』의 목록 1책과「경종어제」1책의 중초를 謄出하여 수정하였음을 아뢰었다. 목록에서 오자가 있어 주를 달은 곳에는 付籤을 붙여 내입하니 예람을 한 후 내려주면 正書하여 입간하려는 것이다. 어람건 초초와 중초는 저주지 한 장 반으로 공격지와 책의를 장황하였으며, 入覽할 때에는 朱紅假函에 담아 1720년 국휼시의 예에 따라 거행하였다.[34] 등출한 목록 1책을 예람한 영조는 1책은 너무 두꺼우니 2책으로 만들라고 명하여『열성어제』의 목록은 2책으로 粧册하게 되었다.[35]

신간한「경종어제」를 이전『열성어제』8책의 끝에 첨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한 책으로 만들어 9책에 수록할 것인지를 3월 7일에 논의하였다. 이즙은「경종어제」는 십 여 판에 불과해 별도로 한 권을 만드는 것은 필요치 않고 8책의 끝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다. 영조는 경종어제를 8책에 첨부할 경우 8책이 너무 두껍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8책에 그대로 부치라고 하였다.

34) 국휼시에는 어람건을 陪進하는 신하들은 白帽와 白袍를 입었으며, 앞에서 인도하는 儀仗과 鼓吹를 생략하였다. 자세한 것은 3장 2절의「열성어제」의 진상을 참조.
35) 등록, 三月二十七日.

www.kci.go.kr

그런데 4월 11일에 홍석보가「경종어제」를 8책의 말권에 첨부하면 8책이 백십여 판이 되어 너무 두껍게 된다고 아뢰었다. 이는 3월 7일에 이즙이「경종어제」가 십 여 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홍석보는 [「숙종어제별편」·「경종어제」·발문]을 합하면 40여 판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라리 조금 얇더라도 진상건은 [「경종어제」·발문]만을 엮어 9책으로 장책하는 것이 어떨지 아뢰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일찍이 자신이 전교하였던 사실을 언급하고, 진상건은 [「숙종어제별편」·「경종어제」·발문]의 순으로 9책을 장책하라고 명하였다.[36]

2.3『열성어제』의 板刻과 印出

2.3.1『열성어제』의 板刻

경종의 어제는 수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제를 精潔한 厚白紙에 베껴냈다. 다음으로 어제는 初草와 中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과정마다 어람을 통하여 재가를 받았다. 3월 27일에 종부시에서 열성어제 목록 1책과 경종어제 1책의 중초를 베껴내어 수정하였음을 아뢰었다. 목록에서 오자가 있어 주를 달은 곳에는 付籤을 붙여 내입하니 예람을 한 후 내려주시면 正書하여 入刊하고자 아뢰었다. 영조는 목록 1권은 너무 두꺼우니 2권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1726년『열성어제』를 첨간하는 과정에서 용도에 따라 쓰인 종이의 종류와 수량은 <표 3>과 같다.[37]

종부시는 3월 15일에 어제를 付板하여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종이로 아주 좋은 품질의 정결한 백지를 搗砧하여 7권 10장을 진배하라고 감결을 내렸다.[38] 도침은

36) 현전하는『열성어제』의 9책은 [「숙종어제별편목록」4판 +「숙종어제별편」14판 +「경종어제목록」1판 +「경종어제」15판 +발문 21판 = 55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37)「열성어제」첨간에 들어가는 각양의 종이들은 다섯 개의 창이 있는 집에 별도로 보관하였다. 등록, 四月四日.

38) 등록, 同日(三月十五日). "右甘結 今此御製付板開刊次 極品精潔搗砧白紙 柒卷拾張---等物進排事 戶曹工曹長興庫司贍寺."

www.kci.go.kr

종이를 제조한 다음에 행해진 가공법으로 서사재료로써 종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사할 때 백지를 도침하여 사용하였으며, 왕실에서 서책을 간인할 때 付板하는 종이는 보통 백지를 사용하였으며, 인출지는 초주지와 저주지를 사용하였다.[39]

3월 30일 종부시에서 호조에 보낸 공사에 따르면 3월 29일부터 御製의 刻役을 시작하였는데 각수의 과반이 僧工과 外方工人이므로, 하루에 세 번 食主人家에 왕래하면 각역이 지체되므로 料米와 饌物을 例에 의해 먼저 6일분을 보내어 각역이 지연되는 폐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40] 그러나 호조는 요미만을 지급하고 찬물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종부시에서는 외방에서 捉來하여 부역하는 각수는 일자를 계산하여 찬물을 지급하는 것이 전례였음을 언급하며 찬물의 지급을 다시 요청하였다.[41]

4월 9일 종부시는 어제 개간에 부역하고 있는 諸色工匠들의 부역일자를 후록하여 요미를 지급하라는 공사를 호조에 보냈다. 이 후록에서 각수 20명의 8일간 찬물을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기록되어 있다.[42] 외방에서 온 僧刻手들은 종부시 내에서 밥을 해먹는데 매일 각역을 감당하느라 찬물을 마련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에게 찬물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 이들 승각수의 명단은 등록의 끝에 기록되어 있는데 再貞・三郁・次馨은 廣州에서 왔고, 雪順・快責・執令・執澤・朴萬采・之安・實徵・時老・再元・雙敏은 북한산성의 승각수였다.[43]

앞서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산군의 상소로 인해, 종부시는 경종의 시로 인출된 면을 수정하기 위해 초초・재초・부판 등에 쓸 종이를 6월 11일 관련 관서에 요청하였다. 다음날인 6월 12일에는 계를 올려 『경종어제』와 목록에서 七言絶句인 '庚寅菊秋' 詩를 빼고, 발문에서 시의 篇數 한 글자만 고치는 것으로

39) 도침의 용례에 대해서는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서책 粧績시의 搗砧에 관한 고찰," 『古文書硏究』 27(韓國古文書學會, 2007) 참조.
40) 등록, 三月三十日 戶曹公事.
41) 등록, 四月日 戶曹公事.
42) 등록, 四月初九日 戶曹公事. "刻手貳拾名限捌日 加磨鍊饌物上下事."
43) 등록, 四月初四日. "北漢摠攝爲牒報事."

www.kci.go.kr

아뢰었다. 영조는 이 3板을 고친 후 인출하여 어람건・휘람건・반사건 모두『선원보략』을 改張하는 예에 의해 改粧하라고 명하였다.44)

<표 3> 1726년『열성어제』첨간시에 쓰인 종이

일자	용도	종이 종류	卷・張數
2월 24일	御製 謄出次	精潔 厚白紙	10張
3월 12일	御製 出草次	精潔 厚白紙	2卷
3월 13일	御製 中草次	楮注紙	2卷3張半
3월 15일	御製 付板 開刊次	極品 精潔 搗砧 白紙	7卷10張
	公事	白休紙	2斤
	御製 中草 御覽件 不足	楮注紙	5張
	御製 中草 御覽件 隔紙・粧衣次	楮注紙	1張半
	舊板子 刓缺 校正次	厚白紙	16卷 2張半
3월 16일	御製 初草 不足	厚白紙	2卷10張
	御覽	楮注紙	2卷10張
	御製 出草 御覽件 不足	楮注紙	5張
	御製 出草 御覽件 粧衣・空隔次	楮注紙	1張
3월 19일	御製 付板次 精潔	白紙	4卷
3월 21일	列聖御製 目錄 出草次	厚白紙	10卷
	草謄錄次	白紙	1卷
	啓目	啓目紙	5張
3월 25일	御製 上疏 謄出次	壯紙	11張
3월 29일	校正 7件 所入	厚白紙	
	進上・進獻件 印出	草注紙	273卷 7張半
	新・舊頒賜件 印出	楮注紙	1,430卷
	進上・進獻件 册衣	草注紙	3卷
3월일	新板 初・再見	厚白紙	6卷
	草謄錄 不足	白紙	10卷
	公事	白休紙	2斤
3월 30일	舊頒賜 400册 册衣	-	-
4월 6일	新跋文 印出次	草注紙・楮注紙	-
4월 14일	進上進獻 15件 別編目錄 每件	草注紙	2張
	5處奉安件 別編目錄 每件	厚白紙	2張

44)『선원보략』은 보통 새롭게 수정되는 면만을 인출하여 이전 건에서 해당하는 면을 교체하여 改粧하였다.

www.kci.go.kr

일자	용도	종이 종류	卷·張數
4월 16일	御製 印出次 未收	草注紙·楮注紙	3卷7張半
	御製 新舊頒賜 印出 不足	楮注紙	37卷10張
4월 18일	新跋文·別編目錄 初·再見	厚白紙	9張
	啓目	啓目紙	3張
	公事	白休紙	2斤
4월 20일	5處奉安件 印出紙 輸送	草注紙	92卷10張
6월 11일	『列聖御製』 改修正時 初草·中草	厚白紙·楮注紙	各 3張式
	『列聖御製』 改修正時 付板	精潔白紙	2張
	啓目	啓目紙	2張
	公事	白休紙	1卷
6월 12일	進上·進獻 15件 改張	草注紙 2張式	30張
	奉安 5件 改張	草注紙 2張式 10張	2卷
	頒賜 250件 改張	楮注紙 1張半式	18卷 15張
6월 13일	御製 改修時 初見·再見	厚白紙	3張

2.3.2 『열성어제』의 印出

3월 7일에 종부시 제조 이즙은 『열성어제』의 印出에 대해 아뢰었다. 大殿 御覽件과 東宮 徽覽件은 『열성어제』의 本冊을 모두 인출하여 전례대로 진상하고, 반사건은 이전에 반사받은 『열성어제』를 수취하여 이번에 새로 간인한 본만을 인출하여 이전 반사건에 첨부하여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즙은 1725년 『선원보략』의 예와 같이 반사할 『열성어제』는 본책을 모두 인출하지 않아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조는 1725년의 『열성어필』의 예와 같게 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서책을 간인할 때 항상 국왕에게 인출 건수를 여쭈어 결정하였다. 1726년 『열성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영조가 이전에 간인한 『열성어제』·『열성어필』·『선원계보기략』의 國用件 수효를 하문하여 3월 10일 종부시에서 아뢰었다.[45] 아래의 <표 4>는 연도별 왕실서책의 國用件數를 나타낸 것이다. 종부시

45) 왕실서책에 관한 다양한 기록에서 國用件과 頒賜件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본 등록에서도 종부시에서 영조에게 국용건수를 아뢰면서 등록을 살펴보니 국용

www.kci.go.kr

의 보고를 받은 영조는『열성어제』의 국용건수를 50건으로 결정하였다.

<표 4> 연도별 왕실서책의 국용건수

간인년도	서명	국용건수
1691년	열성어제	100건
1720년	열성어제	200건
1722년	열성어필	200건
1723년	열성어필	200건
1725년	선원보략	200건
1725년	열성어필	150건

4월 11일 夕講으로 입시했을 때 特進官 홍석보는 경종어제를 續刊하고 目錄을 새로 새기는 刻役을 거의 마쳐, 진상・진헌건과 봉안건에 들어갈 숙종어제의 別編과 함께 인출해야 함을 아뢰었다. 따라서 大內에 수장되어 있는 숙종어제 별편의 板本을 종부시에 내주면 인출한 후, 이번에 새로 새긴 별편 목록의 판본과 함께 還入하고자 아뢰었다.[46] 즉 숙종어제 별편은 반사건은 인출하지 않기 때문에 판본을 종부시에 수장하지 않고 대내에 수장하고 있었기에 4월 12일에 종부시에 내주었다.

『열성어제』의 인출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한 명의 인출장이 맡았고,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趙甲辰을 포함한 10명의 인출장이 담당하여 진행되었다. 4월 20일에 春秋館에서 사고 5처 봉안건『열성어제』를 인출하는데 들어갈 종이 90권을 마름질하여 수송하니 전례에 따라 인출하여 보내라는 관문이었다. 이에 대해 종부시 당상은 부족한 인출지 2권10장을 바로 수송하여 때에 맞추어 인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題辭를 내렸다.[47] 이로 볼 때 1726년의『열성어제』봉안건을 인출

건과 반사건은 같은 것으로 구별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용건은 반사건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다. 등록, 三月初十日. "啓曰 列聖御製 御筆璿源譜略 國用件爻問啓事命下矣 取考謄錄 則國用件與頒賜件 自是一般 無可區別."

46) 등록, 四月十一日.

47) 등록, 同日(四月二十日). "堂上題辭內 當印出以送 而印紙不足貳卷拾張是如乎 卽爲輸送以爲及時印出地之向事."

www.kci.go.kr

하는데 필요한 종이를 춘추관에서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월 17일에 종부시는『열성어제』의 인출지를 도침할 때 쓰이는 人力과 物力을 繕工感 외의 관련 관서에 감결을 내렸다.[48] 이때는 진상일자가 임박하여 야간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장인들이 쓸 燈油 2升과 光明臺 5部 등도 진배하도록 하였다. 어제를 도침한 날자는 등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4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야간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열성어제』를 장황하기 전에 인출지를 도침하여 장책했을 때의 두께를 줄이고, 지면을 매끄럽게 만들었다.[49]

4월 21일 사자관 4인은『열성어제』진상건과 진헌건의 제목을 서사하였다. 이는 4월 18일 종부시에서『열성어제』의 제목을 서사하는데 필요한 잘 만든 황필 4병과 현정묵 2장을 진배하라고 호조와 병조에 내린 감결을 통해 알 수 있다.[50] 1726년『열성어제』를 添刊할 때 赴役 일자와 인원은 <표 5>와 같다.

<표 5> 1726년『열성어제』添刊時 赴役 일자와 인원

御製 書寫(寫字官)		刻役(刻手)		印出(印出匠)		粧績(册匠)	
일자	인원	일자	인원	일자	인원	일자	인원
2/29-3/1	2인	3/29-4/6	20명	4/2-4/9	1명	-	
3/13	2인	4/14-4/19	10명	4/10-4/15	1명	4/13-4/17	6명
3/14-3/16	7인			4/16-4/20	10명	4/18-4/20	11명
3/21	5인	-	-	4/21-4/25	10명	4/21-4/30	12명
3/24-3/26	10인	6/15	2명	6/17	5명	6/19	5명
3/27-3/28	3인	4월 11일: 경종어제와 목록의 각역을 거의 마침.					
3/29-4/8	4인	4월 22일:『열성어제』진상.					
4/21	4인	6월 19일:『열성어제』改張.					

어제의 서사는 2월 29일에 시작하여 4월 8일에 마쳤으며, 목판에 새기는 각역은 3월 29일에 시작하여 4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각역을 마친 어제는 4월 2일에

48) 등록, 四月十七日.
49) 서책을 장황하기 전에 인출지를 도침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269-278쪽 참조.
50) 등록, 四月十八日.

www.kci.go.kr

인출을 시작하여 4월 25일까지 이루어졌다. 인출한 어제는 장황에 들어가는데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황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열성어제』첨간은 서사→각역→인출→장황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듯이 3월 29일부터는 서사가 진행되는 중에 먼저 서사를 마친 어제에 대한 각역이 들어가고 이어서 다음 단계로 맞물리며 각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4월 6일부터 20일까지는『열성어제』첨간의 작업이 가장 바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월 12일에 어제가 겹친 부분을 改修하기로 결정되어 6월 13일과 14일 사이에 3板의 초초와 중초를 서사하였을 것이다. 3판의 각역은 6월 14일 감결에 의하면 상의원과 내수사의 조각장 2명이 담당하였으며[51], 인출은 6월 17일에 인출장 5명이 담당하였다.[52]

3.『열성어제』의 보존 체계

3.1『열성어제』의 粧績

인출을 마친『열성어제』는 장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맞추어 종부시에서는 미리 장황에 들어갈 물품과 도구들을 관련 관서에 요청하게 된다. 3월 13일에 종부시는 교서관에 册匠 李枝成을 보내도록 감결을 내렸는데, 아마도 어람하기 위한 경종어제의 初草와 中草를 장책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날부터 종부시는 본격적으로『열성어제』를 장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종부시는 진상할『열성어제』10건 내에 緞衣 2건과 紙衣 8건, 진헌할 5건 내에 단의 1건과 지의 4건에 대해 매건 10책씩 장황할 때 쓸 재료와 도구를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호조에 公事를 보냈다. 이어서 3월 16일에는 반사할『열성어제』50건

51) 등록, 六月十四日. "右甘結 今此 御製改修正時 彫刻匠貳名 當刻內定送事 尙衣院 內需司."
52) 등록, 六月十七日, "啓曰 今此 御製疊錄處 旣已改修正 印出矣."

www.kci.go.kr

을 장황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와 도구를 호조에서 算員을 정하여 前例를 상고하여 일일이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공사를 보냈다.

그런데 3월 29일 종부시에서 호조에 보낸 公事에 의하면『열성어제』의 진상·진헌건과 신반사건이 매건 모두 11책이니, 장황에 들어가는 각양의 물품을 이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다.[53] 처음『열성어제』의 개간을 논의하였을 때에는 목록을 1책으로 만들어 모두 10책이었는데, 3월 27일 영조가 목록 1책이 너무 두꺼우니 2책으로 만들라는 傳旨를 내려『열성어제』는 11책이 되었다. 이를 건별로『열성어제』의 책수와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1726년『열성어제』의 冊數

件別	冊數의 구성	件數	總冊數
進上件	目錄 2冊+舊件 8冊+[別編·景宗御製·兩度跋文]1冊=11冊	10件	110冊
進獻件	目錄 2冊+舊件 8冊+[別編·景宗御製·兩度跋文]1冊=11冊	5件	55冊
奉安件	目錄 2+冊舊件 8冊+[別編·景宗御製·兩度跋文]1冊=11冊	5件	55冊
新頒賜	目錄 2冊+舊件 8冊+[景宗御製·兩度跋文]1冊=11冊	50件	550冊
舊頒賜	目錄 2冊+[景宗御製·壹度跋文]1책=3冊	200件	600冊

3월 30일에는 종부시에서『열성어제』의 舊頒賜 200건에 첨부할 2책식 400책의 冊衣를 장황할 때 들어가는 종이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例에 의해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호조에 공사를 보냈다. 4월 6일 종부시는『열성어제』진상·진헌건의 책의를 黃染하여 진배하기 위해 當該 書員을 정송하도록 濟用監에 감결을 내렸다. 4월 6일 제용감 서원 鄭元徵은 다음과 같은 侤音(다짐)을 하고, 초주지 3권을 황염하기 위해 제용감으로 가지고 갔다.

> 4월 6일 濟用監 書員 鄭元徵 年69
> 아뢰옵기는, 제가 御製 진상진헌의 冊衣를 黃染하기 위해 草注紙 3권을 받아 가오니, 이번 4월 9일 내에 잘 물들여 바치오되,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잘하지 못한 폐가 있으면,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실 일입니다.[54]

53) 등록, 同日(三月二十九日) 戶曹公事.
54) 등록, 四月初六日 濟用監書員 鄭元徵 年六十九. "白等 矣身亦 御製進上進獻 冊衣黃染次

www.kci.go.kr

서책을 장책할 때 묶는 실은 冊絲라고 하는데, 책사는 尙衣院의 多繪匠이 담당하여 만들었다. 4월 5일 상의원의 다회장인 劉海望는 책사를 만들기 위해 종부시에서 홍진사를 가져가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였다.

> 4월 5일 多繪匠 劉海望 年36
> 아뢰옵기는, 제가 御製 진상진헌의 冊絲를 위해 紅眞絲 6량, 纓子 2개를 함께 만들어 들이기 위해 받아가오니, 4월 12일 내에 잘 만들어 바칠 생각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精하지 못한 폐가 있게 되면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실 일입니다.[55]

4월 13일 종부시는『열성어제』를 장황할 때 필요한 廣松板으로 만든 登床과 小剪板 등의 장책도구들을 진배하라는 감결을 호조를 비롯한 관련 관서에 내렸다.[56] 冊衣를 말리기 위한 大竹 등의 장책도구들은 장황을 마치면 공급한 관서에 돌려주는 것이 상례이다.[57] 4월 17일에 인출한『열성어제』를 도침하러 조지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공급할 것을 호조 및 관련 관서에 감결을 내렸다.[58] 이로 보아 진상・진헌건『열성어제』의 인출울 4월 17일 이전에 마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월 18일에는 도침하러 갈 때『열성어제』의 인출지를 묶을 結裹條所 5巨里를 선공감에게 공급하라는 감결을 내렸다.

『열성어제』를 장황할 때는 房舍에 地衣를 깔고 작업을 하였다.[59] 4월 20일에 종부시는 호조・선공감・사재감・其人에 감결을 내려 진상건『열성어제』를 장황하는데 비가 와서, 책의를 말리기 위해 온돌에 땔 소목3단과 탄3두를 공급하라

草注紙三卷受去爲白去乎 今初九日內 精染來納爲白乎矣 若有過限不精之弊 則依法治罪敎事."

55) 등록, 同日(四月初五日) 多繪匠 劉海望 年三十六. "白等 矣身亦 御製進上進獻 冊糸次 紅眞絲陸兩 纓子貳介 幷以造納次 受去爲白去乎 今月十二日內 精造來納計料爲白置 若有過限不精之弊 則依法治罪敎事."

56) 등록, 同日(四月十三日).

57) 왕실서책을 장황할 때 사용된 장책도구들의 쓰임과 공급처에 대해서는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한 연구,"『書誌學硏究』第31輯(書誌學會, 2005) 참조.

58) 등록, 四月十七日 甘結.

59) 등록, 四月十三日. "右甘結 今此御製粧績時 房舍所排地衣一浮 所羅三部 甁貳介 等物用下次進排事."

www.kci.go.kr

고 하였다.[60] 『열성어제』를 진상하는 進上吉日이 4월 22일인데 날짜는 임박해오는데 비가 오자 이러한 감결을 내린 것이다. 1726년 『열성어제』의 장황을 담당한 冊匠은 崔得男・朴有信・趙贊成・吳弼周・李枝成・李德昌・朴後成・金震泰・朴贊信・朴孝男・崔世夏・朴世徵으로 모두 12명이다. 이들 중 김진태・최세하・박세징을 제외한 책장들은 영조대에 『선원계보기략』의 장황을 담당하였던 교서관의 책장이다.[61]

1726년 건별에 따른 『열성어제』의 장황에 쓰인 재료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진상건은 10건 중 2건을 남대단으로 장황하였고, 진헌건은 5건 중 1건만을 남대단으로 장황하였으며, 나머지는 초주지로 장황하였다. 종부시 璿源錄廳과 네 곳의 사고 선원각에 봉안하는 『열성어제』 5건의 장황은 4월 7일 호조에서 종부시에 보낸 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종부시에서 봉안 5건에 들어갈 장황 재료를 전례대로 지급하라고 호조에 요청하자 4월 7일 호조에서 이에 대해 종부시에 관문을 보낸 것이다. 이 관문에서 언급한 '봉안건 장황의 전례'는 『선원계보기략』의 경우에는 진상건과 같은 재료로 장황하는 것이 常例이다. 또한 이것은 1727년 윤3월 22일에 오대산 사고 선원각에 『열성어제』 11책을 봉안한 과정을 기록한 형지안에 '緞衣'로 표기되어 있어, 1726년 『열성어제』 봉안건은 단의로 장황한 것을 알 수 있다.[62] 진상・진헌건 『열성어제』는 椵板으로 만든 函과 櫝에 담아 진상하기 때문에 진상일에 맞추어 함궤를 만들어야 한다. 1726년의 경우 3월 13일에 종부시는 제조에게 稟目을 올려 함궤의 제작이 시급하니 감결을 내려 소용물품과 匠人을 取用할 것을 아뢰었다. 같은 날 종부시는 함궤 제작에 필요한 단판 4立 5尺을 진배하고, 小木匠 3명 외에 솜씨 좋은 장인들을 뽑아 보내도록 호조・선공감・내수사・상의원에 감결을 내렸다.[63]

---

60) 등록, 四月二十日. "右甘結 今此御製進上冊子粧績時 雨勢如此 冊衣乾正次 溫堗燒木三丹炭參斗 卽卽進排事 戶曹 繕工監 司宰監 其人."

61) 의궤와 등록에 임시로 설청한 도감에 동원되었던 장인들을 항상 전원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모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영조대의 「선원계보기략」의 장책을 담당한 책장에 대해서는 조계영, 앞의 논문, 66-72쪽 참조.

62) 「雍正五年閏三月二十二日璿源錄奉安形止案」(奎9633).

63) 등록, 三月十三日 甘結.

www.kci.go.kr

<표 7> 1726년『열성어제』의 장황 재료

장황재료	進上件·進獻件		新頒賜件	舊頒賜件
	緞衣	紙衣		
印出紙	草注紙	草注紙/白綿紙	楮注紙	楮注紙
空隔紙	草注紙 1張	草注紙 1張	-	-
隔紙	草注紙 1張	草注紙 1張	楮注紙 1張	楮注紙 1張
冊衣	藍大緞	草注紙 半張	楮注紙 半張	草注紙 半張
後褙	楮注紙 2張	楮注紙 2張	厚白紙 2張·白休紙 1張	厚白紙 2張·白休紙 1張
膠末	2合	2合	1合	1合
紅眞絲	4分	4分	3分	3分
黃蜜	-	2分	2分	2分
長題目	白綾	-	-	-
長題目綰	紅方沙紬	-	-	-

緞衣로 책의를 장황한『열성어제』는 진상 2건과 진헌 1건으로 모두 3건이다. 이 3건의『열성어제』는 책수에 따라 大櫝와 中櫝에 담았다. 책의를 紙衣로 장황한『열성어제』는 진상 8건과 진헌 4건으로, 진상건 88책은 大函 2부에 나누어 담고, 진헌건 44책은 대함 1부에 담았다.『열성어제』봉안 5건은 종부시에서 봉안건을 넣을 궤 5부를 빨리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호조에 보낸 공사를 통해 궤에 담아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64]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진상·진헌건『열성어제』의 함궤

件 別	緞 衣		紙 衣	
	件數·冊數	入盛	件數·冊數	入盛
進上 10件	2件 22冊	大櫝 1部	8件 88冊	大函 2部
進獻 5件	1件 11冊	中櫝 1部	4件 44冊	大函 1部

4월 1일 호조에서 단의로 장황한『열성어제』를 담은 궤 2부의 안을 꾸밀 多紅花方紬 16척 5촌과 지의로 장황한『열성어제』를 담을 함 3부의 안을 꾸밀 藍花方紬

64) 등록, 四月十四日 戶曹公事. "爲相考事 今此 御製開刊時 本廳及外四處奉安次 入盛櫝伍部 及內外所裹袱諸具等物 急速磨鍊上下向事."

www.kci.go.kr

27척 5촌을 종부시에 보내왔다. 그런데 남화방주가 부족하여 종부시에서는 算員에게 실제 필요한 만큼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호조에 공사를 보냈다.[65] 현재 『열성어제』를 담았던 궤는 전하지 않지만, 당시 궤를 열면 다홍색의 화방주에 담긴 푸른빛의 『열성어제』는 매우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어 왕실서책의 위상을 지녔으리라 짐작된다.

<그림 3> 『열성어제』(奎2986)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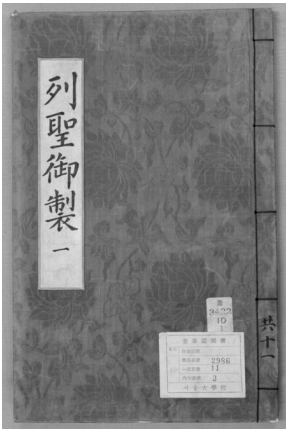

<그림 4> 『열성어제』(奎2986)

6월 12일에 어제가 첩록된 부분을 改修하기로 결정되어 3판에 대한 서사・각역・인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로 인출된 3장을 『열성어제』 각 건에서 교체한 후 장황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 6월 19일에 책장 최득남・조찬성・박유신・박찬신・최세하는 궐내 賓廳에서 『열성어제』의 改粧을 담당하였다.[6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 1726년 간인본 『열성어제』를 실사해보니 10帙이 현전하는데, 이 현전본은 장책의 구성과 장황 재료에 따라 <표 9>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67] 즉 「숙종대왕별편」이 수록되어 있는가와 남대단과

65) 등록, 四月二日 戶曹公事.

66) 등록, 六月十四日, "右甘結 今此 御製改修進上時 冊匠崔得男趙贊成朴有信朴贊信崔世夏等 今十九日平明 定送于闕內賓廳爲旀."

67) 粧冊의 구성에서 사용한 알파벳은 <부록 2>의 '장책'에서 「열성어제」의 목록과 권차를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다.

www.kci.go.kr

지의 중 어느 것으로 장황했는가에 따라 대별하였다. 먼저 3번은 장책기호 'o'에 해당하는 「숙종대왕별편」이 없어 경종의 어제가 권17로 되어 있으며 지의로 장황하였으므로 반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2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상건의 9책을 [「숙종어제별편」·「경종어제」·발문]의 순으로 장책하라는 영조의 명이 있었는데, 1번과 2번은 이와 같은 형태로 장책되어 있다. 다만 2번은 목록 a와 b를 한 책으로 장책하여 총책수가 10책으로 되었으나 수록 범위는 1번과 동일하다. 또한 1번은 앞뒤에 공격지를 두고 남대단으로 장황했으므로 진상 2건·진헌 1건·봉안 5건 중의『열성어제』에 해당할 것이다. 2번은 지의로 장황했으므로 진상건 8건과 진헌건 4건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68]

<표 9> 규장각에 현전하는 1726년 간인본『열성어제』의 장책과 장황

번호	청구기호	粧冊의 구성[69]	總冊數	粧績	一帙의 두께	비고
1	奎2986· 奎3584· 奎3669	a·b·[c,d]·[e,f]·[g,h]·[i,j]·k·l·m·n·[o·p]	11책	藍大緞· 앞뒤空隔紙	18.6cm	書根題[70]
2	奎2869· 奎5535	[a,b]·[c,d]·[e,f]·[g,h]·[i,j]·k·l·m·n·[o·p]	10책	紙衣	13.8- 13.9cm	-
3	奎3587· 奎3691· 奎3922· 奎3911· 奎3688[71]	a·b·[c,d]·[e,f]·[g,h]·[i,j]·k·l·m·n·p	11책	紙衣· 앞空隔紙	19.6- 20.2cm	橫題目[72]

68) 물론 이것은『열성어제』가 改粧되거나 장책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9) 장책의 구성은 예를 들어 [c, d]란 c卷과 d卷이 한 冊으로 장책되었음을 의미한다.
70) 청구기호 '奎3669'는 서근제가 묵서되어 있지 않다.
71) 奎3688은 장책의 구성과 장황은 동일하나, 목록 중 상권에 해당하는 a가 빠진 10책의 落帙本이다.
72) '橫題目'은 서책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編目을 冊衣의 오른쪽 상단에 가로로 적은 것이다. 청구기호 '奎3911'은 횡제목이 묵서되어 있지 않다.

www.kci.go.kr

3.2『열성어제』의 進上과 奉安

1726년 4월 21일에『열성어제』의 진상・진헌건과 반사건을 봉안건보다 먼저 인출하여 장황까지 마치었다. 따라서 日官에게『열성어제』를 진상할 吉日을 推擇하게 하여 4월 22일로 잡았다. 1726년에 간인한『열성어제』는 4월 22일에 국왕에게 진상하고 왕세자에게 진헌하였다. 이 날 종부시의 당상인 이즙・홍석보, 낭청인 성진령・洪彦度・尹慶一, 교정관 이영・이정박이 종부시에서 출발하여 임금이 계신 창덕궁 인정전까지『열성어제』를 받들고 나아갔다. 진상건『열성어제』는 承旨가 承傳色에게 청하여 대내에 들여 진상하였다. 세자궁에 진헌하는『열성어제』는 侍講院의 관원이 承言色에게 청하여 들였다.[73]

『열성어제』의 진상 의례는 1724년 8월에 승하한 경종의 國恤중이었기 때문에,『열성어제』를 陪進하는 신하들은 白帽와 白袍를 입었으며, 앞에서 인도하는 儀仗과 鼓吹를 생략하였다.[74] 이것은 1720년 12월 29일에『열성어제』를 진상할 때 숙종이 6월에 승하하여 國恤중이었기 때문에,『열성어제』를 배진하는 신하들은 吉服을 입지 않고 時服으로 백모와 백포를 입었으며, 앞에서 인도하는 儀仗과 鼓吹를 하지 않았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국휼이 아닌 평시에 왕실서책을 진상할 때는 의장과 고취가 앞에서 인도하고, 왕실서책을 받들고 임금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신하들은 길복을 입고 따르는 진상 의례를 거행하였다.[75]

『열성어제』를 진상할 때 대내에서 내려준 경종의 上疏 11本・批答 2本・御製謄草 14本・別編 8板・新刊 別編目錄 2板을 함께 올렸다.[76] 4월 12일에 대내에 수장되어 있던 별편 판본을 내어주었는데 그 때 내어준 판본이 8판의 목판이었음

---

73)『열성어제』의 진상과 진헌 절차는 4월 21일 종부시의 啓에서 알 수 있다. 규14202의 등록에는 종부시의 계가 '4월 26일'로 되어 있으나, 규14203의 등록에는 '4월 21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규14203의 일자가 맞다.

74) 등록, 四月二十一日.

75) 조선후기 왕실서책의 진상 의례에 관해서는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績과 保存硏究,"(博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硏究院, 2006년), 92-102쪽 참조.

76) 등록, 四月二十日. "前下大行朝上疏十一本批答二本御製謄草十四本 別編八板新刊別編目錄二板 並爲封進之意 敢啓."

www.kci.go.kr

을 알 수 있다. 홍석보가 4월 11일에 진상・진헌건과 봉안건의 별편을 인출한 후, 새로 새긴 별편 목록과 함께 환입하겠다고 아뢴 대로 4월 22일에『열성어제』를 진상하면서 함께 올린 것이다.

『열성어제』의 진상을 마치고 영조는『열성어제』첨간을 담당한 종부시 당상 이하 모두를 書啓하라고 명하였다.[77] 4월 23일 종부시에서 올린 서계에 따라 영조는 備忘記를 내려 시상하였으며, 종부시는 동일한 서계를 세자궁에도 올려 세자궁에서도 상을 내렸다. 종부시에서 올린 서계에 따른 시상 내역은 <부록 1>과 같다. 영조의 비망기에서는 실제 근무일이 9일이었던 제조 여성군 이즙과 16일간 근무한 홍석보에게 상으로 熟馬 1匹을 내렸고, 발문을 지은 이의현에게는 半熟馬 1필을 내렸다. 이에 반해 세자궁(孝章世子: 1719-1728)에서는 제조에게 中豹皮 1令을, 이의현에게는 小豹皮 1령을 상으로 내렸다.

또한 화원・창준과 員役工匠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망기에서는 호조와 병조에서 料米와 價布를 마련하여 제급하라고 하였다. 영조대 원역과 공장들은 부역시에 日給으로 實役日子에 따라 평균적으로 요미 3升과 가포 木 1尺 1寸을 받았다.[78] 특히 1725년『선원보략』의 간인을 담당했던 장책장이 요미 2승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726년『열성어제』첨간시에 장인에게 지급한 요미는 2승이고 가포는 목 1척 1촌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세자궁에서는 刻手부터의 工匠들에 대해서 서계에서 각 분야의 대표 장인으로 기록된 片首 장인들에게만 시상하였다는 것이 차이난다. 즉 각수・장책장・인출장 편수에게 布 1필을 내렸고 그 외의 편수 장인에게는 錢 3량 5전으로 시상하였다.[7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12일에 첩록된 어제를 改修하기로 결정하여 6월 17일에 인출을 마쳤다. 이어 진상길일을 6월 19일로 택하여 종부시에서 궐내로 나아가 4월 22일에 내입하였던『열성어제』를 내주기를 청하였다. 이 때 최득남을 포함한 책장 6명은 궐내 빈청에서『열성어제』의 잘못된 장을 빼내고 새로 개장하였다. 이러

77) 등록, 四月二十二日.
78) 조계영, "조선후기 왕실의 册匠과 粧册에 관한 연구,"「書誌學硏究」第31輯(書誌學會, 2005) 67-69쪽 참조.
79) 등록, 四月二十三日. "世子宮賞格."

www.kci.go.kr

한 절차는 1691년『열성어제』를 개장했을 때의 예에 의한 것이었다.[80] 이로 미루어 볼 때 1691년『열성어제』가 진상한 후에 다시 개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등록에서는 1726년 간인한『열성어제』의 봉안 과정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선원록봉안형지안」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왕실 족보류에 해당하는『국조어첩』과『선원보략』등은 수정한 후 진상을 마치면 초초·중초와 반사건에서 빼낸 장을 종부시에서 洗草하고 舊板子는 태워버린 후에 교정청을 撤局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봉안 5건 가운데 종부시 璿源錄廳에 먼저 봉안한 후 지방 네 곳의 선원각에 차례로 봉안하게 된다.「선원록봉안형지안」은 지방 네 곳의 사고에 있는 선원각에 왕실의 御帖과 선원록 등을 봉안할 때의 시종을 기록한 문서로 2부를 작성하여 선원각에 있는 형지안궤에 한부를 보관하고, 한 부는 종부시 선원록청에서 보관하였다.[81]

1726년에 간인한『열성어제』를 오대산 사고 선원각에 봉안한 과정은「雍正五年閏三月二十二日璿源錄奉安形止案」(奎9633)을 통해 알 수 있다. 1726년은 丙午 式年이어서 선원록과 국조어첩을 작성하였고,『열성어제』와『열성어필』도 간인하였는데 종부시에서 미처 선원각에 봉안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727년 1월 25일 종부시 선원록청에서 1727년에 수정한『선원보략』도 함께 봉안할 것을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 이에 봉안사로 종부시 제조인 려성군 이즙이 낭청은 종부시 정 정광제가 차정되었다.

봉안사행은 2월 26일 辭朝한 후 선원록청에 와서 태백산과 오대산 사고 선원각에 봉안할 어첩·선원록·『열성어제』를 받들고 출발하였다.[82] 봉안사행은 윤3월 9일에 태백산 선원각에 봉안한 후에 경상도 各務差使員과 배행하여 윤3월 14일에 강원도 평해 경계에 있는 夜音村에 도착하였다. 봉안사행은 강원도 각무차사원과 교체 배행하여 윤3월 21일에 月精寺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잤다. 다음 날인 윤3월

80) 등록, 六月十七日. "合部進上吉日 今日官推擇 則近間皆有拘忌 今十九日最吉云 依辛未年列聖御製改張時例 臣等進詣闕內 請出內入冊子 合部以入之意 敢啓."

81) 현전하는「선원록봉안형지안」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1629년 9월 16일에 오대산에 선원록을 봉안하고 작성한「五臺山藏 璿源錄奉安形止案」(奎9435)이다.

82) 어첩과 선원록을 사고 선원각에 봉안할 때의 시행 세칙은 종부시의「式年奉安事目」을 참작하여 1702년에 마련한「御牒璿源錄奉安時事目」에 자세하다.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書冊의 粧績과 保存 硏究,"(博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硏究院, 2006), 104-105쪽 참조.

www.kci.go.kr

22일에 봉안사행과 각무차사원은 선원각에 나아가 肅拜하고 선원각을 열고 奉審하였다. 봉안사행은 이전에 봉안한 서책들을 모두 꺼내어 포쇄한 후 서울에서 가져간 어첩・선원록・『선원보략』改張 등을 봉안하고 선원각을 봉쇄하였다. 봉안사행과 각무차사원들은 모두 사배하고 물러 나왔다.

이 때 오대산 선원각에는 1631년『열성어제』1책・1679년『열성어제보유』1책・1682년『열성어제』4책이 戾字櫝에 봉안되어 있었다.[83] 1726년에 간인한『열성어제』11책은 1720년『열성어제』8책이 봉안되었던 寒字櫝에 함께 봉안되었다. 이 궤의 상하에는 충해와 습기를 막기 위해 芎浦末을 담은 苧布로 만든 甲帒를 넣었다.[84]

3.3 舊頒賜件의 收聚와 新頒賜

1726년에 첨간한『열성어제』의 반사건은 50건이었다. 1726년에 새로 반사하는 건을 본 등록에서는 '新頒賜件'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1720년 12월에 간인하여 1721년에 반사한『열성어제』200건은 '舊頒賜件'으로 지칭하고 있다. 종부시에서 구반사건은 제신들에게 전에 반사했던『열성어제』를 거둬들여, 이번에 새로 신간한 본만을 인출하여 이전 반사건에 첨부하여 돌려주기를 청하였다.[85] 구반사건은 1720년에 간인한『열성어제』8책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다시 인출하여 주지 않는 것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16일에 종부시 제조 이즙은 반사건을 50건으로 명하셨으나, 諸臣 중에는 1720년에 하사받은 자가 많으니 금번은 반사 받지 못한 제신에게만 반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다. 이에 영조는 2품이상과 三司의 한림과 주서에게 예에 의해 반사하고, 승정원에서 單子를 수정할 때 1720년에 반사 받은 자는 각기

83) 사고의 사각과 선원각에 봉안하는 서책을 담은 궤는 천자문의 순서대로 궤명을 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84) '芎浦末'은 川芎과 芎芎末을 가리킨다. 이 약재는 사고 사각에 봉안한 서책을 담은 실록궤에도 마찬가지로 넣었다. 송기중・신병주・박지선・이인성,「<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85) 이러한 사례는「선원보략」이나「열성지장통기」의 간인에서도 '舊本收聚添印'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왕실서책이 지니는 '添刊'의 특징이다.

www.kci.go.kr

이름 아래에 주를 달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86] 본 등록의 끝에 「新頒賜落點」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87]

<표 10> 1726년『열성어제』반사 50건 명단

大司成 洪錫輔	奉敎 趙明澤	假注書 李德載	靈雲君
刑曹參判 李鳳祥	待敎 韓顯譽	假注書 安相徽	南原君
戶曹參判 金取魯	檢閱 沈泰賢	注書 宋秀衡	咸陵君
行副司直 尹鳳朝	戶曹參議 金鎭玉	司諫 李端章	夏川君
兵曹參判 李裕民	禮曹參議 李潗	弼善 韓頤朝	礪恩君
江華留守 朴師益	兵曹參議 李顯祿	校理 金龍慶	蓮豊君
同知敦寧府事 沈廷輔	刑曹參議 洪子人	諮議 李頤根	海恩君*[88]
左承旨 朴聖輅	戶曹護軍 朴乃貞	執義 朴弼周	鶴城君
左副承旨 愼無逸	行副護軍 黃璿	全羅監司 金祖澤	海陵君*
右副承旨 李倚天	行副護軍 羅學川	慶州府尹 趙文命	東恩君
同副承旨 慶聖會	副司果 申弼賢	義州府尹 李聖龍	齊平君
-	行副司果 鄭宅河	江原監司 柳復明	原豊都正
-	-	-	敦寧都正 李明會
-	-	-	一新都正*
-	-	-	昌恩正

『열성어제』를 신반사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6월 12일에 어제가 첩록된 부분을 개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신반사한『열성어제』또한 개장해야만 했다. 이에 6월 16일 종부시는 신반사 50건을 수취하여 개장한 후에 다시 반사할 수 있도록 각 部의 書員들에게 신반사한 각 댁의 명단을 베껴가서『열성어제』를 수납하라고 감결을 내렸다.[89] 이로 볼 때 신반건은 6월 16일 이전에 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86) 등록, 三月十六日. "礪城君所啓 今番御製刊印時 有加進五十件之敎 聖意將欲頒賜諸臣而 諸臣曾多受賜者 今番只賜未受賜諸臣 似好矣 上曰 二品以上及三司翰注 例爲頒賜政院修正單子時 曾已受賜者 各於名下懸注 入之可也."

87) 등록, 六月日. 「新頒賜落點」.

88) <표 10>은 '奎14202'의 등록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이 명단 가운데 '*'부호를 붙인 海恩君・海陵君・一新都正은 '奎14203'의 등록에는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다.

89) 등록, 六月十六日. "今番 新頒賜 御製五十件 收聚改張還頒次 各部書員 卽卽來待本寺頒賜各宅謄去收納事."

www.kci.go.kr

1720년에 반사한『열성어제』200건을 수취하기 위해 종부시에서는 1720년에『열성어제』의 간인을 담당했던 교서관에「御製頒賜件 落點置簿記」를 납부하라는 감결을 보냈다.[90] 본 등록의「신반사낙점」앞에는「列聖御製 辛丑年頒賜二百件」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교서관에서 보내온「어제반사건 낙점치부기」를 참고하여 수록한 것일 것이다.[91]

3월 30일에 종부시는 한성부의 東部·西部·南部·北部·中部에 1720년에『열성어제』를 반사받은 각 댁은 4월 4일까지 종부시에 수납하라는 감결을 내렸다. 각부의 該吏 등은 종부시에 와서 반사 받은 각 댁을 낱낱이 베껴가라고 감결을 내렸다.[92] 앞서 종부시는 교서관에서「어제반사건 낙점치부기」를 받아 각 댁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부 해리 등이 와서 자신의 부에 해당되는 각 댁을 적어가서 4월4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즉 종부시에서 각부에 명단을 적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각부에서 종부시에 와서 명단을 파악하여 각 댁에 알리도록 하였다.

종부시의 감결을 받고 4월 7일에 서부에서 가장 먼저 牒呈이 도착하였다. 서부는 종부시의 감결에 근거해 1721년에 반사 받은『열성어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각 家에서 일일이 수취하여『열성어제』2권을 납부한 댁과 납부할 수 없는 댁의 사연을 후록하여 종부시에 첩보하였다.[93]『열성어제』를 반사 받은 댁 가운데 2권을 납부하지 않은 댁의 사연은 종부시에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 댁과 고향으로 내려간 댁이나 귀양 간 댁 등으로 서부에서 수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94]

---

90) 등록, 三月日. "庚子年 御製頒賜件落點置簿記 卽卽來納事."

91) 등록,「列聖御製辛丑年頒賜二百件」.

92) 등록, 同日(三月三十日). "右甘結 節啓下敎 去辛丑年御製頒賜件 與今番新刊御製 添修還頒事 旣已定奪是置 五部是在如中 各宅受賜件 來四月四日內 一一收納又本寺 俾無遲滯之弊爲乎矣 所受各宅乙良 各部該吏等 來詣本寺 一一謄去事 漢城府 中部 東部 西部 南部 北部."

93) 여기에서의 '卷'은 장책의 순서를 칭하는 '冊次'를 의미한다. 등록, 四月初七日. "西部爲牒報事 本寺甘結據 辛丑年受賜列聖御製 時存各家良中 一一收聚後錄爲乎旀 或謫居或下鄕乙仍于 自當部勢不得收納 緣由牒報事."

94) 본 등록에서 언급한 2권은「열성어제」8책 가운데 初卷과 終卷을 가리키는 것으로, 초권은 권1과 권2를 장책한 것이고, 종권은 권15와 권16을 장책한 것이다. 등록, 五月初二日. "西部

www.kci.go.kr

참판 朴泰恒 댁의 경우는 반사받은『열성어제』가 遠鄕에 있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었다. 또한 校理 徐宗伋宅은 현재 明禮洞에 거주하고 있었고, 參議 崔敬中宅은 會賢洞에 살고 있어 서부에 속하지 않기에 수납할 수 없다는 사연도 보고되었다. 柳左議政宅은 慶興으로 귀양갔으며, 참판 李世最宅은 光州로 귀양가 있었다. 서부에서 종부시에 보고한 이 첩정으로 인해 1721년과 1726년 사이에『열성어제』를 반사 받은 각 댁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다. 이 첩정에 대해 종부시 당상은 보고되지 않은 각 댁은 家直奴에게 다시 재촉하여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라고 데김(題辭)을 내렸다.[95]

<표 11> 4월 7일 西部의『열성어제』반사건 보고 내용

二卷納宅	直納云宅	下去·移居宅	謫居宅
判書 金演宅	參判 黃龜河宅	崔領議政宅 時屬龍仁	柳左議政宅 慶興地謫居
判書 兪集一宅	驪川君宅	趙領議政宅 擧家下去禮山縣	參判 李世最宅 謫居光州地
判書 李麟徵宅	驪善君宅	崔左議政宅 下去楊州美河里	-
判書 沈檀宅	全陽都正宅	李領議政宅 擧家下去公州地	-
參議 兪命疑宅	長溪都正宅	趙右議政宅 擧家下去原州地	-
參議 李東馣宅	原昌都正宅	判書 黃欽宅 下去公州地	-
參議 柳憲章宅	-	判書 李晩成宅 下去春川地	-
參議 洪重禹宅	-	參判 李綷 下去高陽地	-
參議 李眞望宅	-	參判 權以鎭宅 擧家下去公州地	-
右尹 張鵬翼宅	-	判書 李明彥宅 擧家下去淸州地	-
參議 權熀宅	-	校理 徐宗伋宅 時居明禮洞	參判 朴泰恒宅 冊子在於遠鄕
校理 徐宗燮宅	-	參議 崔敬中宅 時居會賢洞	-
注書 姜必愼宅	-	-	-
參判 李萬選宅	-	-	-
參判 南就明宅	-	-	-

서부의 보고에 이어, 4월 10일에는 中部에서 종부시의 감결을 받고 소속 각 계에 신칙한 결과를 첩보하였다.[96] 4월 25일이 되자 북부와 남부에서도 처음으로 종부시

爲牒報事…長溪都正宅 御製初終二卷段 收納爲乎旀 其餘各宅段 移居他部 緣由牒報事."

95) 등록, 四月初七日. "題辭內 後錄各宅冊子 依數捧上是乎矣 其他各宅 家直奴處 更加催促推納宜當."

www.kci.go.kr

에 첩정을 올렸는데, 이들 중부·북부·남부의 보고 역시 서부와 마찬가지로『열성어제』의 二卷納宅·直納云宅·移去·謫居·下鄕한 경우를 후록하였다.[97]

4월 25일 북부에서 보고한 사유 가운데 특이한 것은 判尹 李弘述 댁과 靑陵君 댁에서 원래 반사 받은『열성어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다.[98] 본 등록의「열성어제 신축년반사 이백건」에는 漢城判尹 이홍술과 청릉군이 수록되어 있으며, 북부에서는 이 반사건 명단을 베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서관에서 납부한「어제반사건 낙점치부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와 북부의 該吏가 베껴 갈 때 실수하였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문은 5월 15일 북부에서 올린 첩정에서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청릉군 댁에서 반사 받은『열성어제』는 이 날 북부에서 종부시에 수납하였고, 판서 이홍술 댁은 반사 받은『열성어제』를 잃어버렸다고 보고하였다.[99]

또한 5월 15일 북부의 첩정에서는 1726년 5월 현재 북부에 살지 않고 지방의 任所인 抨城郡에『열성어제』를 둔 掌令 金昌翕과 肅川府 임소에『열성어제』를 가져 간 後興君 댁의 경우에는 종부시에서 그 임소에 관문을 발급하여『열성어제』의 수납을 재촉하기를 아뢰었다.[100] 5월 18일 서부에서 올린 첩정에서는 반사 받은 각 댁의 가직노를 다시 신칙하여『열성어제』를 수납한 댁도 있지만, 수납하지 못한 댁의 가직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더 이상 가직노를 재촉하여『열성어제』를 수납할 수 없는 형편을 보고하였다. 즉 가직노들은 상전이 하향하거나 적거할 때에 집안의 잡물을 가지고 가거나 시골에 두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은 서울에서 상전의 집을 지킨다 해도 상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납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다.[101]

---

96) 등록, 四月初十日. "中部爲牒報事 本寺甘結據 御製頒賜冊子 部屬各契良中 所屬各宅一一知委還納之申飭 則各宅以爲直納云云是遣 或爲下鄕是乎所 自當部受納者 及下鄕各宅 後錄牒報事."

97) 동부은 5월 18일에 처음으로 종부시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98) 등록, 四月二十五日.

99) 등록, 五月十五日. "北部爲牒報事…李判書弘述宅冊子闔失…靑陵君宅 貳卷納."

100) 등록, 五月十五日. "北部爲牒報事…其任所良中 自本寺 發關催促事."

101) 등록, 五月十八日. "西部爲牒報事…其餘各宅奴段 以爲矣徒等上典 盡爲下鄕謫居時 家

www.kci.go.kr

6월 1일에 올린 서부의 첩정에서는 參議 李澄 댁이 서부에 소속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6월 4일에는 아직까지 서부에 미납한 각 댁은 원래 가직노가 없고 또 아는 것을 물을 곳도 없어,『열성어제』의 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첩보하였다. 5부 중 구반사건의 수납을 가장 활발하게 거행한 서부는 4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첩정을 올려『열성어제』의 수납을 보고하였다. 본 등록에서는 구반사건의 수납은 6월 4일 서부의 첩정이 마지막 보고이며,『열성어제』를 수납한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4. 맺음말

「경종어제」를 간인하여『열성어제』에 첨간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1726년 1월 종신인 서성도정 이작의 상소에서 시작되었다. 경종은 숙종에 비해 어제의 편수가 많지 않아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종부시에서 이영과 이정박을 교정관으로 차정하여 간인을 주관하였다. 종부시는 경종의 어제를 수집하거나 구반사건『열성어제』를 수납하기 위해 한성부의 각 부에 감결을 내렸다. 감결을 받은 각 부는 소속 계에 신칙하였고, 계에서는 그 결과를 소속 부에 수본을 올려 보고하였으며, 각 부는 종부시에 이를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이러한『열성어제』첨간시의 행정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26년의『열성어제』첨간이 이전과 구별되는 점은 처음으로『열성어제』의 목

藏雜物 或持去是乎旀 或移置於鄕曲 迷劣奴婢等 雖是留京家直是乎乃 上典所爲之事 何以詳知得納之處乎是如爲有等以 自當部執難受納 緣由牒報事."

www.kci.go.kr

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목록은 종부시 제조인 여성군 이즙이 건의하여 사가 문집의 목록을 참조하여 범례와 함께 마련되어 2책으로 장책하였다.『열성어제』의 목록과「경종어제」는 초초・중초・초견・재견의 과정을 거쳐 3월 29일에 각역을 시작하여 4월 30일에 장황을 마쳤다. 장황을 마친『열성어제』는 함궤에 담아 4월 22일에 국왕에게 진상하고 왕세자에게 진헌하였다. 6월 12일에는 어제가 첩록된 부분에 대한 改修가 결정되어, 6월 19일에 책장 6명이 모든 건의『열성어제』를 改張한 후 다시 장황하였다.『열성어제』의 봉안은 1727년 윤3월 9일에 태백산 사고 선원각에 봉안하였고, 윤3월 22일에 오대산 사고 선원각에 봉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景宗大王御製添刊時謄錄』(奎14202)을 분석하여 조선후기『열성어제』의 편간과 보존에 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의 사후에 어제를 수집하고,『열성어제』의 목록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 인출한『열성어제』를 보존하기 위해 장황→진상→봉안→반사에 이르는 전모를 알 수 있었다.

본 등록에는 1691년에 종부시 제조 이우・권유와 교정관 이탁・감동관 박태익이 주관하여『열성어제』를 開刊하고 改修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열성어제』가 처음 개간된 1631년 이후 숙종대에 세 차례의『열성어제』가 간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대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어제의 수집과 보존은 조선후기『열성어제』의 간인을 정례화시키는 데에 초석을 놓았다. 이후 영조대에는 숙종대의 전례를 계승하여『선원계보기략』과『열성어제』등의 왕실서책의 간인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현전하는『御製草謄錄』(奎12998)은 1687년부터 1694년까지 8년간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御製를 수집하는 과정을 수록한 등록이다. 이 등록에는 실록에 등재되어 있는 어제를 史庫를 포쇄할 때에 考出한 사실과, 八道와 各府에 왕래하였던 문서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어제초등록』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열성들의 어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주관하였던 종부시의 역할과 기능을 자세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御製草謄錄」(奎12998, 1687-1694년).

「列聖御製」(奎2985, 1720년).

「列聖御製」(奎2986・奎3584・奎3669・奎2869・奎5535・奎3587・奎3691・奎3922・奎3911・奎3688, 1726년).

「列聖御製」 1-15(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2년-2004년).

「景宗大王御製添刊時儀軌」(奎14202・奎14203, 1726년).

「宗簿寺謄錄」(奎13002, 1726년-1735년).

「度支準折」(奎古5127-3, 1880년경).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1-4, 2005.

_____.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4, 2003-2005.

2. 논저

김남기. "「列聖御製」의 편찬과 국왕 시문의 특징."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김문식.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 「藏書閣」 제3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송기중, 신병주, 박지선, 이인성.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李鍾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 「藏書閣」 창간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_____.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第26號(韓國書誌學會, 2002).

趙啓榮. "조선후기 왕실의 冊匠과 粧冊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31輯(書誌學會, 2005).

www.kci.go.kr

_____. “朝鮮王室 奉安 書册의 粧績과 保存 硏究.” 博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硏究院. 2006.

_____. “조선후기 왕실서책 粧績시의 揭砧에 관한 고찰.”「古文書硏究」31(韓國古文書學會, 2007).

黃晶淵. “朝鮮後期 宮中 御筆 收藏과 印刊.”「藏書閣」제12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www.kci.go.kr

<부록 1> 1726년『열성어제』첨간시의 시상

書啓		備忘記	世子宮 賞格
提調	礪城君 李樘(實仕9日)	熟馬 1匹	中豹皮 1令
	洪錫輔(實仕16日)		
跋文製述官	李宜顯	半熟馬 1匹	小豹皮 1令
校正官	李枺(實仕42日)	加資	大鹿皮 1令
校正兼跋文書寫官	李挺樸(實仕42日)	6品 遷轉	大鹿皮 1令・白木 1匹
正	成震齡(實仕41日)	陞敍	筒箇 1部
主簿	洪彦度(實仕42日)		
	尹慶一(實仕46日)		
書寫 寫字官 上護軍	鄭萬興	高品付錄	白木 1匹
	李義芳		
	趙聖基		
	洪億基		
畵員	許俊	米布題給	胡椒 2升
次知 唱准 副司正	韓德基・朴弘濟		
書吏	徐挺翼 等 4人		丹木 4斤
庫直	池達河		丹木 2斤
使令	韓元起 等 3名		丹木 3斤
刻手	劉二碩 等 21名		布 1匹
粧册匠	崔得男 等 12名		
印出匠	趙甲辰 等 10名		
蹄刻匠	吳大興 等 3名		錢 3兩 5돈
磨板軍	高萬希 等 3名		
豆錫匠	玄去音迚 等 2名		
大木手	金成萬 等 2名		
小木匠	朱二贊 等 3名		
漆匠	金光澤 等 2名		
多繪匠	劉海望		
屛風匠	崔碩山		
引鉅匠	崔詹男 等 2名		
紙匠	金二軍 等 2名		
針線婢	金香		

www.kci.go.kr

<부록 2> 1726까지 간인된『열성어제』의 卷冊과 수록범위

편찬 담당자	冊次	卷次	수록 범위	粧冊
李楫·洪錫輔 奉敎追編(1726년)	上	目錄	卷之一 ~ 卷之九	a
	下	目錄	卷之十 ~ 卷之十八	b
李俁 奉敎編次·權愈 奉敎証定, 權愈 跋文(1682년)	一	卷之一	太祖大王詩·文 定宗大王詩 太宗大王詩·文	c
		卷之二	世宗大王詩·文 文宗大王詩·文 端宗大王詩	d
	二	卷之三	世祖大王詩	e
		卷之四	世祖大王文 睿宗大王文	f
	三	卷之五	成宗大王詩	g
		卷之六	成宗大王文 中宗大王詩·文	h
	四	卷之七	仁宗大王詩·文 明宗大王文 宣祖大王詩·文	i
		卷之八	仁祖大王文 孝宗大王詩·文 顯宗大王詩	j
宋相琦·李觀命 奉敎編次, 金民澤·兪拓基·金濟謙 奉敎校勘 權愈·李觀命 跋文(1720년)	五	卷之九·卷之十	肅宗大王詩	k
	六	卷之十一·卷之十二	肅宗大王詩	l
	七	卷之十三·卷之十四	肅宗大王文	m
	八	卷之十五·卷之十六	肅宗大王文	n
		卷之十七	肅宗大王別編	o
李楫·洪錫輔 奉敎編次, 權愈·李觀命·李宜顯 跋文(1726년)	九	卷之十八	景宗大王詩文	p

www.kci.go.kr

www.kci.go.kr